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시 ○○구 ○○길 ○○ 소재 4층 건물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경영하다가 피고의 공작물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밝힌 대로 원·피고는 같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 고는 음식점경영을 위하여 비상구통로에 20Kg들이 액화석유가스(L.P.G.)통(다 음부터 이 사건 가스통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피고의 음식점 주방 까지 호스로 연결하여 가스를 사용하여 왔는데,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던 위 비 상구 통로는 그 폭이 1m. 길이가 5m로서 평소에는 바깥 출입문을 잠근 채 가 스통을 교환할 때에만 문을 열었으므로 환기가 되지 아니하여 가스 누출시 적 체될 위험성이 많았으나 가스통의 공급업자(가스판매업자)와 가스충전업자가 이 사건 가스통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급함에 따라, 사고 당시 위 가스통의 상단에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된 밸브의 부품인 스핀들이 파손되어 위 가스가 누출되었는데, 2001, 10, 20, 22:47경 피고 가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밸브를 닫아 그 누출을 차단하려고 하 였으나, 밸브의 고장으로 닫아지지 아니하여 위 가스가 통로에 적체되다가 불 씨에 의하여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의류점내의 내부시설과 의류 가 불에 타 못쓰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위 화재는 이 사건 가스통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가스통의 점유 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화재로 소실된 내부시설의 복구 및 청소를 위하여 금 5,000,000원을 지출하였고, 판매를 위해 화재전날 구입하여 매장에 진열 중이던 의류 100점, 금 5,000,000원어치가 모두 소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돈은 총 10,000,000원입니다.

4. 결 론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사고발생일인 200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현장사진

1. 갑 제2호증 화재증명원

1. 갑 제3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갑 제4호증 거래명세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대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임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지연손해금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